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807호 2010. 11. 30(화)

## ◀ 규 칙 ▶

-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535호) ..... 2
-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536호) ..... 7

## ◀ 훈 령 ▶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제230호) ..... 10

## ◀ 입법예고 ▶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0-1004호) ..... 30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제20101009호) ... 47

## ◀ 공 고 ▶

-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계획서(안) 공람 · 공고(제2010-1005호) ..... 71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73

회 람									
--------	--	--	--	--	--	--	--	--	--

**규 칙**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1월 30일

포항시 규칙 제 535호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포은도서관·대잠도서관의 자료실 : 매월 첫째·셋째월요일, 신정·설·추석연휴
- 2. 영암도서관의 자료실 : 매월 둘째·넷째월요일, 신정·설·추석연휴
- 3. 오천도서관 : 매주 월요일, 토·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 4. 동해석곡도서관 : 매주 금요일, 토·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익일

제3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원하는 자가 국가기관이” 를 “원하는 사람이 국가기관에서”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 를 “포항시”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서관 이용시간

구분	이용시간
자료실	09:00~18:00
열람실	08:00~22:00 (단, 신정·설·추석연휴는 09:00~19: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이용시간) 포항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와 같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은 <u>시장의 승인을 얻어</u> 이를 조정 할 수 있다</p>	<p>제2조(이용시간) ----- -----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p>
<p>제3조(휴관) ① (생략)</p> <p>1. <u>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u></p> <p>2. <u>포은·오천도서관, 도서정보센터 : 매주 월요일</u></p> <p>3. <u>영암도서관 : 매주 금요일</u></p> <p>4. &lt;신 설&gt;</p>	<p>제3조(휴관) ① (현행과 같음)</p> <p>1. <u>포은도서관·대잠도서관의 자료실 : 매월 첫째·셋째월요일, 신정·설·추석연휴</u></p> <p>2. <u>영암도서관의 자료실 : 매월 둘째·넷째월요일, 신정·설·추석연휴</u></p> <p>3. <u>오천도서관 : 매주 월요일, 토·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u></p> <p>4. <u>동해석곡도서관:매주 금요일, 토·</u></p>

현 행	개 정
<p>② 관장은 장서점검과 도서점검, 시설의 정리, 수리 및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고,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임시 휴관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u>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익일</u></p> <p>② ----- ----- - 그 밖에 ----- ----- ----- -----그 밖에 ----- ----- -----</p>
<p>제4조(자료의 대출) ① (생략)</p> <p>1.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p> <p>2. 포항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p>	<p>제4조(자료의 대출) ① (현행과 같음)</p> <p>1. ----- 사람</p> <p>2. ----- ----- 사람</p>
<p>② (생략)</p> <p>제5조(회원증 발급) ① 자료대출을 원하는 자가 <u>국가기관이</u>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하면 회원증(별지 제1호 서식)을 발급하여 대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제5조(회원증 발급) ① ----- -원하는 사람이 국가기관에서 --- ----- ----- ----- ----- ----- ----- -----</p>
<p>② (생략)</p> <p>제10조(자료의 변상) ① ~ ② (생략)</p> <p>③ 관장은 징수한 변상금을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자료의 변상)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 ----- -----포항시----- -----</p>

현 행			개 정																						
<b>【별표】</b> 도서관 이용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하절기</th> <th>동절기</th> </tr> </thead> <tbody> <tr> <td>자료실 (포은·영암·오천)</td> <td>09:00~ 18:00</td> <td>09:00~ 18:00</td> </tr> <tr> <td>어린이도서관(실) (포은·영암·오천)</td> <td>09:00~ 17:00</td> <td>09:00~ 17:00</td> </tr> <tr> <td>열람실 (포은·영암·오천)</td> <td>08:00~ 22:00</td> <td>08:00~ 21:00</td> </tr> <tr> <td>도서정보센터</td> <td>09:00~ 19:00</td> <td>09:00~ 19:00</td> </tr> </tbody> </table>			구분	하절기	동절기	자료실 (포은·영암·오천)	09:00~ 18:00	09:00~ 18:00	어린이도서관(실) (포은·영암·오천)	09:00~ 17:00	09:00~ 17:00	열람실 (포은·영암·오천)	08:00~ 22:00	08:00~ 21:00	도서정보센터	09:00~ 19:00	09:00~ 19:00	<b>【별표】</b> 도서관 이용시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이용시간</th> </tr> </thead> <tbody> <tr> <td>자료실</td> <td>09:00~18:00</td> </tr> <tr> <td>열람실</td> <td>08:00~22:00 (단, 신청·설·추석연휴는 09:00~19:00)</td> </tr> </tbody> </table>		구분	이용시간	자료실	09:00~18:00	열람실	08:00~22:00 (단, 신청·설·추석연휴는 09:00~19:00)
구분	하절기	동절기																							
자료실 (포은·영암·오천)	09:00~ 18:00	09:00~ 18:00																							
어린이도서관(실) (포은·영암·오천)	09:00~ 17:00	09:00~ 17:00																							
열람실 (포은·영암·오천)	08:00~ 22:00	08:00~ 21:00																							
도서정보센터	09:00~ 19:00	09:00~ 19:00																							
구분	이용시간																								
자료실	09:00~18:00																								
열람실	08:00~22:00 (단, 신청·설·추석연휴는 09:00~19:00)																								

1. 개정이유

휴관일 축소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이용시간을 수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별 휴관일을 축소·변경하고자 함(안 제3조)
-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각 분관별로 달랐던 이용시간을 “자료실 09:00 ~ 18:00” , “열람실 08:00 ~ 22:00” 로 통일함 (별표)
-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수정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11월 30일

포항시 규칙 제 536호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포항시립미술관” 을 “시립미술관”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결정한 구입한 구입가격보다” 를 “결정한 구입가격보다” 로 하고,  
“20%이상” 을 “20퍼센트 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채점제가부제를” 을  
“채점제와 가부제를” 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제목 중 “포항시립미술관” 을 “포항시 시립미술관” 으로 하고,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 을 “포항시 시립미술관” 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 을 “포항시 시립미술관” 으로 하고, “포항시  
립미술관장” 을 “시립미술관장” 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 을 “포항시 시립미술관” 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 을 “포항시 시립미술관” 으로 하고, “포항시

립미술관장”을 “시립미술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제목 중 “포항시립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을 “포항시립미술관”으로 하고, “포항시립미술관장”을 “시립미술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을 “포항시립미술관”으로 하고, “포항시립미술관장”을 “시립미술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을 “포항시립미술관”으로 하고, “포항시립미술관장”을 “시립미술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제목 중 “포항시립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하고,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장”을 “시립미술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을 “포항시립미술관”으로 하고, “포항시립미술관장”을 “시립미술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본문 중 “포항시립미술관”을 “포항시립미술관”으로 하고, “포항시립미술관장”을 “시립미술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3조(매표) ① 포항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개관시간 30분전부터 폐관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3조(매표) ① 시립미술관.....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소장작품 선정절차 등) ① ~ ② (생략)</p> <p>③ 작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 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가격을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 가격 중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다만, <u>결정한 구입한 구입가격보다 상하 20%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다시 평균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한다.</u></p> <p>④ 작품평가위원회에서 가격 결정된 작품 중에서 수집 결정을 하되, <u>채점제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u>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 16호 서식의 작품수집 심의안,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집추천작품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소장작품 선정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결정한</u> <u>구입가격보다...20퍼센트 이상</u>..... ..... .....</p> <p>④..... .....<u>채</u> <u>점제와 가부제를</u>..... ..... .....</p>

1. 개정이유  
2010년 1월 8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미술관 명칭 변경 및 자구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립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변경
  - 자구의 일부를 어법에 맞게 수정

**훈 령**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11월 30일

포항시 훈령 제 230호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할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대행업무 구역)**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장소 및 주차금지 장소 중에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3조(대행운영 기간 등)** 견인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견인 대행업무 대행 기간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재 지정 할 수 있다. 대행업체가 변경될 시에는 이를 이유로 연고권,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대행업체의 선정)** ① 대행업체의 선정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1년 이상 주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개인
2.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단체·개인

**제5조(대행업체의 지정)** ① 대행업체의 수는 1개 업체로 하되, 시장은 행정 여건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정된 대행업체는 기득권을 이유로 반대할 수 없다.

② 대행업체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6조제1항과 제36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등과 시행령 제17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제1항의 규정 및 시장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행업체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행업 지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행업체 업무범위)**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견인이동
2.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 및 반환
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인수 통지
4.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이동,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의 부과·고지 및 징수

**제7조(대행업체의 인감신고)** ① 대행업체는 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각종 의사 표시를 위한 문서에는 반드시 지정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할 인감은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대행업체는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변

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견인차량보관소)** ① 대행업체는 시에서 정하는 지역 중에서 본인소유 또는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토지에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차량보관소는 남·북구 관할 행정구역 안에 각각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분리 설치된 각각의 견인차량보관소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견인차량보관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출입구와 접한 도로의 폭은 8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의 교차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동시에 2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면을 구획하여야 한다.
3. 견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가지 중심부(죽도동 오거리 중심부)를 기점으로 견인차량보관소 부지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4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은 일단의 부지에 함께 있어야 한다.
5. 차량관리와 반환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견인 이동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안전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주차구획은 1대당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며,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체의 인력)** ① 대행업체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차 1대당 특수운전(레커)면허를 소지한 견인차 운전원 1명 이상
2. 견인보조원 약간 명
3. 사무원 1명 이상
4.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견인차량보관소를 분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사무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체의 장비)** ① 대행업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1. 1대 이상의 견인차량 보유
- 2. 사무소, 차의 보관장소와 견인차 간의 통신장비
- 3. 그 밖의 대행업체 운영에 필요한 장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견인차량은 대행업체에서 본인소유로 직영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 도장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개시 신고)** 견인대행자는 사업개시 신고 후 즉시 견인대행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3조(차량의 견인 등)** ① 법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차량(“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표시가 부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견인대상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견인하여야 한다.

②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견인이동 지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차량은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을 위하여 결박 등 조치를 하는 중 또는 이동을 위한 출발 전에 차량의 소유자(운전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즉시 소유자(운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견인료를 징수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할 경우에는 그 차량이 있던 장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반환장소와 이동취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견인이동통지서를 작성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주차단속담당공무원이 긴급히 견인이동 지시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다른 차량에 우선하여 견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기 전 반드시 피견인 차량의 훼손상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촬영하여 향후 분쟁 시 증거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의 보관 및 반환)** ① 견인된 차량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자(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사용자 등이 견인한 시간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인수통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지를 알 수 없을 경우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견인한 차량은 지정된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견인 또는 보관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에게 있다.

**제15조(견인시간)** ① 견인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하고, 폭우·폭설 등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의 주요행사나 교통소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견인시간 외에도 견인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대행업체의 보고)**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의 현황
2. 소요비용 부과·징수 상황
3.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중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상황
4. 종사자의 인적사항 및 임용·해임사항
5. 각종 장비의 변동상황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대행업체의 장부비치)**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견인이동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
2. 보관중인 자동차 인수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3. 대행업 지정증(별지 제3호 서식)
4. 견인료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의1, 제4호의2 서식)
5. 주차위반차량 견인이동 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보관차량 인수증(별지 제6호 서식)
7. 보관차량 열람부(별지 제7호 서식)
8. 견인단속 업무일지(별지 제8호 서식)
9. 주차위반차량 견인이동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10.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 사업계획 요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1. 견인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12. 소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13. 종사원 신상명세서
14. 무선국 설치 허가증

**제18조(대행업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업체의 종사자는 친절·봉사의 자세로 대행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차량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제19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① 견인,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과 징수 방법은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요비용의 귀속은 시행령 제18조 및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보관료는 견인 이동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된 시간으로부터 해당 차량의 인수를 위하여 차량소유자 등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20조(사업개선명령)**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에 관한 사항
2.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력, 장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대행업체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시장은 지정된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대행업체의 의무와 책임)** 대행업체는 다음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의무

- 가. 불법주차차량 견인의 의무(법 제35조제2항)
- 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법 제35조제3항)
- 다.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명령준수 의무(법 제36조제3항)
- 라. 보험가입의 의무(시행령 제17조제3항)

2. 책임

- 가. 견인 중은 물론 견인 착수 전 또는 견인 종료 후에라도 통상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피견인차의 손해에 대한 보상 책임(시행령 제17조제3항)
- 나.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직접보상
- 다. 대행업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제22조(대행업체의 지정취소·정지)**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명령에 위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지정취소 및 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대행업체를 양수·양도한 경우

- 2. 대행업체 자격요건에 미달한 경우
  - 3. 제2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불응한 경우
  - 4. 견인지시권자의 견인지시를 거부한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체의 지정취소·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견인대행업무 수행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관계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대행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대행업체는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업무의 위탁금지)** 대행업체는 시장이 대행하게 한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제26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1. 법 개정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지정이 불가능할 때
- 2. 제3조, 제5조, 제22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대행업체의 지정취소·정지처분 기준

(시행령 제17조제4항 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제22조제1항제1호 위반	지정취소				
제22조제1항제2호 위반	정지1개월	정지6개월	지정취소		
제22조제1항제3호 위반	경 고	정지1개월	정지3개월	정지6개월	지정취소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	경 고	정지1개월	정지3개월	정지6개월	지정취소
제22조제1항제5호 위반	경 고	정지1개월	정지3개월	정지6개월	지정취소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1호 서식】

견 인 이 동 통 지 서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장 소	포항시 구 동	앞 (노상, 인도)	
위반장소	차량번호	차 종	
적용법령	「도로교통법」 제35조	취 급 자	포항시 견인대행사무소
반환장소	뒷면 참조(견인보관소 주소, 약도, 전화번호 표시)		
인 수 시 준비사항	·견인소요비용(아래표 참조)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견인소요비용을 먼저 납부하여야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귀하의 자동차를 견인이동 조치하여 보관하고 있으니 반환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의해 인수하시기 바라며, 만약 인수가 늦어질 경우 보관료가 가산되어 추가부담 되오니 조속히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사무소장 (직인)

○ 견인소요 비용

구 분 대상차량	견 인 료		보 관 료
	기 본 요 금 (편도 5km까지)	추 가 요 금 (매 1km 증가시)	
2.5톤미만	30,000원	1,000원	1구획당 500원 매30분마다 500원씩 추가징수
2.5톤이상 6.5톤미만	35,000원	1,400원	
6.5톤이상	55,000원	2,500원	

○ 차량 반환시 견인소요금액(예시)

- 포항시 북구 죽도어시장에서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어 00월00일 10시30 분에 보관, 11시30분에 보관장소에서 차량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
  - 납부대상금액 : 26,000원(견인료25,000원 + 보관료1,000원)

○ 주차위반 과태료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 50,000원

※ 차량운전자 및 소유자 등의 관계자외에는 본 통지서를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2호 서식】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사무소

(전화번호 )

분류번호 :

수 신 :

제 목 : **보관중인 자동차 인수통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 차량을 보관중임을 통지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습니다.)

자 동 차	차	종		형	식	
	등 록 번 호					

소 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보 관 경 위	일	시			
	장	소			
	사	유			
	비	고			

년 월 일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사무소장 (직인)

\_\_\_\_\_

\_\_\_\_\_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대 행 업 지 정 증

대 표 자 :

생년월일 :

명 칭 :

소 재 지 :

조 건 :

「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라 위의 자를 불법주차차량 견인 등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직인)

\_\_\_\_\_

\_\_\_\_\_

210mm×297mm[보존용지120g/㎡]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4호의1 서식】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	년도	
납 부 의 무 자	차량번호	
	주 소	
	성 명	
견 인	일 시	
	장 소	
납부금액	금	원
납부내역	견 인 료	보 관 료
납부기한	피견인차량 인수시까지	
납부장소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사무소	
<p>위의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사무소장 (직인)</p>		

80mm × 190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4호의2 서식】

견인소요비용 납부영수증		
제 호	년도	
납 부 의 무 자	차량번호	
	주 소	
	성 명	
견 인	일 시	
	장 소	
납부금액	금	원
납부내역	견 인 료	보 관 료
납부기한	피견인차량 인수시까지	
납부장소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사무소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사무소장		수 납 인

80mm × 190mm[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5호 서식】

주차위반차량 견인이동 처리대상

일련 번호	주차위반단속			주차위반차량			견인이동·보관		
	단속일	단속기관	단속장소	차량등록 번호	차종 (차명)	증거번호	현장 이동일시	보관소 도착일시	이동거리
									km
									km
									km
									km
									km

피견인차량반환청구		소요비용 징수 현황 ※ 필요시 과태료 추가 가능				비고
반환 청구일시	청구자 (자격)	인수증 번호	견 인 료		보관료	
			계	소계		기본요금

※ B4(화)으로 작성

297mm × 210mm [일반용지(60g/㎡(제할용품))]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6호 서식】

보관차량 인수증

인 수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차량등록번호				
차명 또는 형식				

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불법주차차량견인대행사무소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7호 서식】

보 관 차 량 열 람 부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종	형식	원동기 번호	보관 연월일	보관 장소	위반 장소	차량의 특 색	취급자 계 성 명	비고
				차 대 번호						

210mm × 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8호 서식】

견인단속 업무일지

담당	소장	결재

년 월 일	20 . . . ( )	날 씨	
-------	--------------	-----	--

견인차량 가 동	보유 대 수	가 동 대 수	미가동대수 (미가동사유)

근무상황	구 분	계	출근	휴가	병가	특별휴가	기타
	계						
	반 환 요 원						
	운 전 요 원						

반환업무 담 당 자	시 간 별					
	성 명					

견인이동 보관반환 현 황 (대 수)	계	구 분	계	승용	승합	화물	기타
		전 일 이 월					
		금 일 이 동					
	소 계						
	금 일 반 환						
	금 일 보 관						

과 태 료 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	구 분	계	견 인 료			보 관 료
			소 계	기 본	추 가	
	전 일					
	누 계					
	금 일					
	월 계					
누 계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9호 서식】

No

주차위반차량 견인이동 결과보고서

견인 대상 자동차 스티커 (포항시 No )번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견인이동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이동자 : 견인 제 호 차량 운전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사무소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사무소장 귀하

1. 주차위반 단속 및 위반차량

단속일시	단속기관	단속장소	차량번호	차종/성명	증거번호
	포항시	동			

2. 견인이동 및 보관사항

견인차량번호	견인스티커	견인보관소도착	이동소요거리	비고
		시 분		

3. 견인이동 통지서 부착 위치

가로등	가로수	바닥	벽면	가드레일	하수도	기타	비고

4. 차량 상태 특이사항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별지 제10호 서식】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 사업계획 요약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차고지	소재지				
	면 적		용도지역		
	소유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자본금	
-----	--

인 력 장 비 시 설	사 무 실	대지		건물		
	부대시설	세차, 정비, 점검시설 면적				
	기타시설					
	견인차량	계	2.5톤 이하	2.5톤이상 ~3톤이하	3톤이상 ~5톤이하	5톤이상
		대				
종 사 원	견인차 운전자	명		견인 보조자	명	
	관리자 및 기타					

위와 같이 불법주차차량 견인대행 사업계획 요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1.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관련 법규 조항이 변경되어 규정을 제 정비
- 견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가지 중심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4킬로미터 이내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자격요건을 완화
- 어법이 맞지 않은 어문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행정서식을 제 정비

2. 주요내용

-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대행법인등”을 “대행업체”로 모두 변경
- 나. 대행업체 자격요건 완화 (안 제9조제3항제2호)
  - 견인차량보관소 자격요건 중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란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
- 다. 어법이 맞지 않은 어문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수정
- 라. 행정서식 일제정비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0- 1004호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11. 30.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

**2. 주요내용**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규정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5호 지방세서

면조사서 서식을 변경함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2010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12월 20일(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장, 주소: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1001), 전화 270-2493, 팩스 270-2490, e-mail: kjh0706@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4조” 를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64조” 를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7일” 을 “10일” 로 하고,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증명서(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을 “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법 제26조” 를 “ 「지방세기본법」 제73조” 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64조” 를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1.2.12&gt;</p>	<p>제1조(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 ..... ..... ..... ..... .....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세무조사”라 함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lt;개정 2001.2.12, 2010.11.9&gt;</p> <p>2. ~ 7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 ..... ..... ..... ..... ..... .....</p> <p>2. ~ 7 (현행과 같음)</p>
<p>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①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 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p>	<p>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①..... ..... ..... 10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 .....</p>

현행	개정안
<p>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p>	<p>.....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조사의 개시 등)① (생략)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u>증명서(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u>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제27조(조사의 착수 등)① ( 현행과 같음) ②..... ..... .....<u>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u>..... .....</p>
<p>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법 제26조</u>의 규정에 의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3 (생략)</p>	<p>제30조(조사결과의 통지)..... ..... ..... ..... ..... ..... ..... ..... ..... ..... 1. <u>「지방세기본법」 제73조</u>..... ..... 2. ~ 3 (현행과 같음)</p>
<p>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시장은 <u>법 제64조</u> 규정에 의거 조사공무원증표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하여야 한다.&lt;개정2001.2.12&gt; ② ~ ③ (생략)</p>	<p>제32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u>「지방세기본법」 제136조</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신청서식 목록

연 번	구분	서 식 명	근 거 법 령	비 고
1	정비	지방세 서면 조사서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5호
2	정비	지방세 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5호
3	정비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5호
4	정비	지방소득세 종업원명세서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제원

서 식 명	지방세 서면 조사서		별 지 호 수	별지 제5호서식	
근 거 법 규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주 무 부 처 및 보 조 기 관	재정관리과	
용지의 규격	가로 210mm×세로 297mm		법령 제·개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054-270-2493	
지질 및 중량	일반용지 60g/m <sup>2</sup>		사 용 처	시·군·구/관리기관	
활자	구 분	크 기		보 존 기 간	5 년
		인 쇄	전 산 기 기		
	제 목	16P	인 쇄 구 분	■ 단면 □ 양면	
	내 용	10P	요 청 구 분	□ 신규 ■ 개정	
활 자 의 색 채		흑색	용 지 의 색 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0mm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기재 개선 및 규정에 맞는 서식정비			

■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제중)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제 기)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붙임 :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서식 목차

포 항 시 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 ] 내에 V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사업년도별 작성 - 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년도별(5개년) 각각 작성

※ 작성후 보낼 곳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1001)  
 포항시청 재정관리과(세무지도) 우편번호 : 790-722

※ 문의사항 전화 : (054) 270-2492, 2493 fax (054) 270-2490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 ] 법인등기부등본
- [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 법인소유자산 [토지·건물·용지·시설물(건축물)·차량운반구·기계장비·수수료 등 단) 주택건설판매 법인은 공사원가명세서]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 [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 ] 각 사업년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서식 목차

1. 법인현황<삭제 2008.10.21>
2.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삭제 2008.10.21>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4.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5.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별 지 호 수	별지 제5호서식	
근 거 법 규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주 무 부 처 및 보 조 기 관	재정관리과	
용지의 규격	가로 210mm×세로 297mm		법령 제·개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054-270-2493	
지질 및 중량	일반용지 60g/m <sup>2</sup>		사 용 처	시·군·구·관리기관	
활자	구 분	크 기		보 존 기 간	5 년
		인 쇄	전 산 기 기		
	제 목	16P	인 쇄 구 분	■ 단면 □ 양면	
	내 용	10P	요 청 구 분	□ 신규 ■ 개정	
활 자 의 색 채		흑색	용 지 의 색 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0mm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기재 개선 및 규정에 맞는 서식정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 년도	사업장주소							사업 장 명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7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출 지방소득세

:  $\text{합계(과세표준액)} \times \text{지방세법 제89조의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별 지 호 수	별지 제5호서식		
근 거 법 규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주 무 부 처 및 보 조 기 관	재정관리과		
용지의 규격	가로 210mm×세로 297mm	법령 제·개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054-270-2493		
지질 및 중량	일반용지 60g/m <sup>2</sup>	사 용 처	시·군·구/관리기관		
활자	구 분	크 기		보 존 기 간	5 년
		인 쇄	전 산 기 기		
	제 목	16P	인 쇄 구 분	■ 단면 □ 양면	
	내 용	10P	요 청 구 분	□ 신규 ■ 개정	
활 자 의 색 채		흑색	용 지 의 색 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0mm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기재 개선 및 규정에 맞는 서식정비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단위 : 원)

사업 소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a)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정당 세액 (d)	기납부 세 액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b)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의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 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		별 지 호 수	별지 제5호서식	
근 거 법 규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주 무 부 처 및 보조 기관	재정관리과	
용지의 규격	가로 210mm×세로 297mm		법령 제·개정 담당부서 전화번호	054-270-2493	
지질 및 중량	일반용지 60g/㎡		사 용 처	시·군·구/관리기관	
활자	구 분	크 기		보 존 기 간	5 년
		인 쇄	전 산 기 기		
	제 목	16P	인 쇄 구 분	■ 단면 □ 양면	
	내 용	10P	요 청 구 분	□ 신규 ■ 개정	
	활 자 의 색 채		흑색	용 지 의 색 채	백색
서식의 실제크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20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10mm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기재 개선 및 규정에 맞는 서식정비			

### 지방소득세 종업원 명세서

<사업소명 : > (단위 : 원)

구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소득	급여													
상여															
①소계															
② 비과세소득	연장														
	차량														
	②소계														
③ 종업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③=(a-b)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③×(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는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③)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관 련 법 령

□ 지방세기본법 (발췌)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특별징수의무자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이 조 제3항을 준용한다.

포항시 공고 제2010-1009호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 11. 30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관리 법령 개정에 따른 재산용어 및 기타 변경사항 반영
-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한 매각기준 완화 반영
- 기타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2. 주요내용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안38조)
    -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다른 법률명칭 수정(안 제32조제2호사목)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사유건물 점유·사용대지를 건물 점유자에게 매각 시 매각기준 완화

(안 제40조제1항제4호)

- 현행 :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 개정 :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단서 규정 삭제)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매각기준 명확화(안 제40조제1항제5호)

-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 삭제
-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 ⇒ 읍면지역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2조, 안 제13조,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로 규정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 당 초 : 7등급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2.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2533, FAX 270-2490, E-mail : tws629@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부

2.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규칙안 1 부. 끝.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행정·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행정재산·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가목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영 제49조에 의하여”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재산·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한다.

제20조 본문 중 “행정재산·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행정·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중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행정·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을 “영 제19조” 로,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를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당해 행정·보존재산” 을 “해당 행정재산” 으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 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로 한다.

제23조 제목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제25조 내지 제37조” 를 “제25조부터 제37까지” 로 한다.

제4장 제목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 를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 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2조제1호바목과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 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마목과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 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사목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으로 한다.

제32조제3호마목과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 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사목 중 “제1호 내지 제3호” 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0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38조제5항까지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같은 조 제5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 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00제곱미터” 를 “1,500제곱미터” 로, “2,000제곱미터” 를 “3,000제곱미터” 로, “지방자치단체” 를 “시” 로 하

며,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를 “시” 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를 삭제하고, “광역시·시·군 구의 읍·면지역” 을 “읍·면지역” 으로 하며, “50%이상” 을 “50퍼센트 이상” 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1인당” 을 “1명당” 으로 한다.

제50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중 “1급 내지 2급” 을 “1급 또는 2급” 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제50조 내지 제60조” 를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 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재산을” 을 “그 밖의 재산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인” 을 “2명”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① <u>시장은</u> 모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u>행정·보존재산</u>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4. 다음 각 목의 <u>행정재산·보존재산</u>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가.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p> <p>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p> <p>나. (생략)</p> <p>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u>영 제49조에</u>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u>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행정재산</u> -----</p> <p>-----</p> <p>-----</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행정재산</u>-----</p> <p>-----</p> <p>가. -----</p> <p>----- <u>해당</u></p> <p>-----</p> <p>-----</p> <p>나.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p> <p>-----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49 <u>조에 따라</u> -----</p> <p>-----</p> <p>-----</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b></p> <p>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2. (생략)</p> <p>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행정재산</b></p> <p>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 ----- --</p> <p>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 ----- -----해당----- ----- --</p> <p>② 행정재산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 ----- ----- 1. ~ 7. (현행과 같음)</p> <p>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행정재산----- ----- ----- -----</p>

현행	개정안
<p><b>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b></p> <p>① 재산 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을 위탁하는 때에는 <u>영 제12조 제2항과 제3항</u>,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u>행정·보존재산</u>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 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 <u>법 제27조제2항의 규정</u>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p>	<p><b>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b></p> <p>① ----- -----<u>행정재산</u>----- -----<u>영 제19조</u>----- ----- ----- ----- -----</p> <p>② ----- -----<u>행정재산</u>----- ----- ----- <u>행정재산</u>----- ----- -----</p> <p>③ -----<u>행정재산</u>----- ----- ----- ----- ----- ----- ----- ----- -----</p> <p>④ <u>법 제27조제1항</u>에 따라 ----- ----- ----- ----- ----- -----</p> <p>⑤ -----</p>

현행	개정안
<p>결정하는 경우에는 <u>법 제27조제2항</u>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u>당해 행정·보존재산</u>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u>제1항 내지 제4항</u>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p>	<p>-----<u>법 제27조제4항</u>-----  -----<u>해당 행정재산</u>-----  -----  -----  ⑥ <u>제1항부터 제4항까지</u>-----  -----  -----</p>
<p>제23조(<u>잡종재산</u>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u>제25조 내지 제37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u>일반재산</u> 대부의 준용) -----  -----  -----<u>그 밖에</u>-----  -----<u>제25조 부터 제37까지</u>-----  -----</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u>잡종재산</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u>일반재산</u></p>
<p>제24조(<u>연고권 배제</u>) <u>잡종재산</u>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24조(<u>연고권 배제</u>) <u>일반재산</u>-----  -----  -----  -----  -----</p>
<p>제25조(<u>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u>)</p> <p>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u>법 제35조</u>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p>	<p>제25조(<u>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u>)</p> <p>① -----  -----  -----  -----  -----  -----  -----  -----<u>그 밖에</u>-----</p>

현행	개정안
<p>취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p>	<p>-----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 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p>	<p>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7호 ----- ----- ----- ----- ----- 1. ~ 5.(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 ----- -----</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 ----- ----- 해당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해당 -----</p>



현행	개정안
<p>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 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6. (생략)</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제1호부터 제3호까지---</p> <p>-----</p> <p>-----</p> <p>-----</p> <p>6. (현행과 같음)</p>
<p><b>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b> (생략)</p> <p>1. (생략)</p> <p>가. ~ 마. (생략)</p> <p>바. <u>가목 내지 마목</u>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사. <u>가목 내지 마목</u>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2. (생략)</p> <p>가. ~ 라. (생략)</p> <p>마. <u>가목 내지 라목</u>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 내지 라목</u>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p>	<p><b>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b>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u>----- ----- -----</p> <p>사. <u>가목부터 마목까지</u>----- ----- ----- -----</p> <p>2.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u>----- ----- -----</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u>----- ----- -----</p>

현행	개정안
<p>하는 경우</p> <p>사.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에 의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p> <p>3. (생략)</p> <p>가. ~ 라. (생략)</p> <p>마. <u>가목 내지 라목</u>에 해당하는 기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 내지 라목</u>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p>	<p>-----</p> <p>사.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u>-----</p> <p>-----</p> <p>-----</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u>-----</p> <p>-----</p> <p>-----</p> <p>-----</p> <p>사. -----<u>제1호부터 제3호까지</u>-----</p> <p>-----</p>
<p>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생략)</p> <p>1. ~ 3. (생략)</p> <p>4. <u>기타</u>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p> <p>② ~ ④ (생략)</p>	<p>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략)</p> <p>② (생략)</p> <p>1. ~ 9. (생략)</p> <p>10. <u>기타</u> 필요한 사항</p>	<p>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그 밖에</u> -----</p>

현행	개정안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4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4. (생략)</p> <p>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기타</u>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때</p> <p>4. (생략)</p> <p>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u>잡종재산</u>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p>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  -----<u>일반재산</u>-----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일반재산</u>-----  -----  -----  -----</p> <p>③-----  <u>일반재산</u>-----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  -----  -----</p> <p>4. (현행과 같음)</p> <p>④-----  -----  -----  -----<u>일반재산</u>-----</p>

현행	개정안
<p>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p> <p>1. ~ 3. (생략)</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u>1,000제곱미터</u>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u>2,000제곱미터</u>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u>지방자치단체</u>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u>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u>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u>지방자치단체</u>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u>지방자치단체</u>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u>1,000제곱미터</u> 또는 <u>2,000제곱미터</u>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p>	<p>----- ----- -----</p> <p>⑤-----<u>제1호부터 제4호</u> <u>까지</u>----- -----<u>일반재산</u>----- ----- -----</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lt;삭제&gt;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1,500제곱미터</u> ----- ----- <u>3,000제곱미터</u> ----- ----- -----<u>시</u>----- ----- -----<u>건물바닥 면적의</u> <u>2배 이내 토지</u>----- ----- ----- -----<u>시</u>----- ----- -----<u>시</u>----- ----- -----<u>1,500제곱미터</u>-----<u>3,000제</u> <u>곱미터</u>----- -----</p>

현 행	개 정 안
<p>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p> <p>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구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 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 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p>	<p>----- ----- ----- ----- ----- -----</p> <p>5. 시----- 해당 시----- ----- ----- 시 ----- ----- &lt; 삭제 &gt; ----- &lt; 삭제 &gt;----- ----- ----- 읍·면지역----- ----- ----- ----- 시----- 50 퍼센트 이상----- -----.</p>
<p>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 한다)으로 한다.</p>	<p>제41조(신탁의 종류) ----- ----- 일반재산----- ----- ----- ----- -----</p>
<p>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생략) 1.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p>	<p>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② -----</p>

현행	개정안
<p>규정 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u>1인당</u>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 상의 기준을 적용한다.</p>	<p>----- -----<u>1명당</u>-----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 주택을 말한다.</p>	<p>제50조(정의) ----- ----- <u>그 밖에</u> ----- ----- ----- ---</p>
<p>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생략)</p>	<p>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u>1급 내지 2급</u> 관사에 한한다)</li> <li>3. 보일러 운영비(<u>1급 내지 2급</u> 관사에 한한다)</li> <li>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u>1급 내지 2급</u> 관사에 한한다)</li> <li>5. 전기요금(<u>1급 내지 2급</u> 관사에 한한다)</li> <li>6. 전화요금(<u>1급 내지 2급</u> 관사에 한한다)</li> <li>7. 수도요금(<u>1급 내지 2급</u> 관사에 한한다)</li> <li>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u>1급 내지 2급</u> 관사에 한한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u>1급 또는 2급</u>-----</li> <li>3. -----<u>1급 또는 2급</u>----- -----</li> <li>4. ----- ----- --<u>1급 또는 2급</u>----- -</li> <li>5. -----<u>1급 또는 2급</u>----- -----</li> <li>6. -----<u>1급 또는 2급</u>----- -----</li> <li>7. -----<u>1급 또는 2급</u>----- -----</li> <li>8. ----- --<u>1급 또는 2급</u>-----</li> </ol>

현행	개정안
<p>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u>기타</u> 필요한 사항</p>	<p>제59조(인계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p>
<p>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u>제50조 내지 제60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1조(준용) -----            ---<u>제50조부터 제60조까지</u>---            -----</p>
<p>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u>당해</u>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 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u>기타</u>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u>기타</u>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u>2인</u> 이상인 경우 에는 먼저 신</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u>그 밖에</u> -----            -----            -----            2. ----- <u>그 밖</u>  <u>의 재산을</u>-----            -----            -----            -----            -----            -----            -----            --- <u>2명</u>-----</p>

현행	개정안
<p>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 ④ (생략)</p>	<p>----- ③ ~ ④ (현행과 같음)</p>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 를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항제3호까지와, 제2항제5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정관리과장

제3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를 “제5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이 한다” 를 “총괄재산관리관(공유임야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잡종재산” 을 “일반재산”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u>시</u>의 공유 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p> <p>② (생략)</p> <p>1. 본청에서 사용하는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업무주관과장</p> <p>2. 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관서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과장)</p> <p>3. 본청 및 관서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업무주관과장</p> <p>4. <u>잡종재산</u>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p> <p>5. 의회에서 사용하는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의회사무국장</p> <p>6. (생략)</p> <p>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u>잡종재산</u>은 재정관리과장</p> <p>③ (생략)</p>	<p>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u>포항시</u>(이하 “시”라 한다)-----</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u>행정재산</u> : 업무주관과장</p> <p>2. -----</p> <p>-----<u>행정재산</u>-----</p> <p>-----</p> <p>3. -----</p> <p>-----<u>행정재산</u>-----</p> <p>-----</p> <p>4. <u>일반재산</u>-----</p> <p>-----</p> <p>-----</p> <p>-----</p> <p>5. -----<u>행정재산</u>-----</p> <p>-----</p> <p>6. (현행과 같음)</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정관리과장</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 (생략)</p> <p>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u>기타</u>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u>그 밖에</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관리책임) ① (생략)</p> <p>② 재산관리관은 <u>시장</u>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p> <p>③ ~ ⑥ (생략)</p>	<p>제4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포항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 ----- -----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생략)</p> <p>1. ~ 4. (생략)</p> <p>5. <u>기타</u> 필요한 사항</p>	<p>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p>
<p>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u>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p>	<p>제11조(기부채납) ① ----- ----- ----- <u>제5조 제1항에 따라</u>----- ----- -----</p>

현행	개정안
<p>어 사전에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b> ① 재산관리관은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p>	<p><b>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b> --</p> <p>----- <u>행정재산</u>-----</p> <p>-----</p> <p>-----</p> <p>-----</p> <p>-----</p> <p>-----</p> <p>-----</p> <p>-----</p> <p>② <u>행정재산</u> -----</p> <p>-----</p> <p>-----</p>
<p><b>제17조(인계인수)</b>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b>제17조(인계인수)</b> -----</p> <p>-----<u>해당</u>-----</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b>제18조(등기수속 등) ①</b>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p>	<p><b>제18조(등기수속 등) ①</b> -----</p> <p>----- <u>해당</u> -----</p> <p>-----</p> <p>-----</p> <p>-----</p>

현행	개정안
<p>밟아야 한다.</p> <p>② (생략)</p> <p>1. ~ 6. (생략)</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20조(재산의 취득·처분 등) ① (생략)</p> <p>1. ~ 9. (생략)</p> <p>② 시유재산의 취득은 예산 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그리고 시유재산 중 <u>잡종재산</u>의 매각은 <u>총괄 재산관리관</u>이 한다.</p>	<p>제20조(재산의 취득·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u>일반재산</u>-----</p> <p>-- <u>총괄 재산관리관(공유임야는 그 사무를 관리 하는 부서의 장)</u>이 한다.</p>
<p>제22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생략)</p> <p>1. ~ 3. (생략)</p> <p>4. <u>잡종재산관리대장</u></p> <p>② (생략)</p>	<p>제22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일반재산</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u>행정재산</u> 및 <u>보존재산</u>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p>	<p>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u>행정재산</u>-----</p> <p>-----</p> <p>-----</p>
<p>제27조(대부계약) <u>잡종재산</u>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p>	<p>제27조(대부계약) <u>일반재산</u>-----</p> <p>-----</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시행규칙명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0-1005호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계획서(안) 공람·공고

우리시 북구 환호동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서(안)을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북구청 건축지적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11. 25.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지구명	사업 위치	면적(㎡)	정 비 사 업 주 요 내 용
환여지구	북구 환호동 110번지 일원	35,855	○기반시설설치 - 도로 개설 및 확·포장 4개 노선 - 상하수도 설치

2. 시 행 자 : 포항시장(북구청장)
  3.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일로부터 ~ 2012년
  4.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5. 공람내용 : 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서(안)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관계도서 : 포항시 북구청 건축지적과에 비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축지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4-240-7493, Fax 054-240-7517)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0년 11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 11. 30.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시행일	2010년 11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감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수자원공사) (수원기개일부)	
			안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염수		진전지	늘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용해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변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 유해영양 유기물질	4. 납(Pb)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0.1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17	0.20	불검출	
	6. 비소(As)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6가크롬(Cr <sup>6+</sup> )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sub>3</sub>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sub>3</sub> -N)	10mg/l이하	1.4	0.6	1.1	1.4	1.5	0.3	1.4	1.5	1.0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4	0.01	0.03	0.04	0.04	불검출	0.04	0.04	0.04	
	건강상 유해영양 유기물질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 제 및 소독 부산물	31.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89	0.84	0.79	0.78	0.65	0.22	0.72	0.17	0.96	
	32.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55	0.040	0.056	0.055	0.038	0.036	0.053	0.036	0.054	
	33.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35	0.034	0.048	0.030	0.018	0.024	0.031	0.024	0.047	
	34.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4	0.006	0.008	0.017	0.012	0.010	0.016	0.009	0.007	
	35.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6	불검출	불검출	0.008	0.008	0.002	0.006	0.003	불검출	

구 분	검 사 항 목	경수장,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신뢰,기계업무
			인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복류수 인계염수		진전지	눌터지수	공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전읍	구룡포읍	
	36.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00	50	101	107	103	46	107	46	80
	37.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sub>4</sub> )	10mg/ℓ이하	2.0	2.7	4.7	2.5	1.6	1.7	2.4	3.1	6.9
	38.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9.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1.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2
	42.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수소이온농도(pH)	5.8-8.5	7.1	6.8	7.2	7.2	7.1	6.7	7.2	6.8	7.4
	44.아연(Zn)	3mg/ℓ이하	0.003	0.005	0.004	불검출	0.012	0.003	0.020	0.181	0.003
	45.염소이온(Cl <sup>-</sup> )	250mg/ℓ이하	30	14	12	32	34	12	31	15	12
	46.총발견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96	89	127	205	212	59	198	188	148
	47.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8.망간(Mn)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7	0.08	0.09	0.08	0.10	0.07	0.16	0.10	0.08
	50.황산이온(SO <sub>4</sub> <sup>2-</sup> )	200mg/ℓ이하	44	13	23	46	49	11	45	56	22
	51.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3	불검출	0.06	0.03	0.04	불검출	0.02	0.03	0.05
판 정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경 수 장 급수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87	0.83	0.76	0.75	0.50	0.21	0.78	0.23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19	
7.아연	3mg/ℓ이하	0.019	0.004	불검출	0.005	0.008	0.003	0.002	0.362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31	14	12	32	34	12	28	16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1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